



2013 계약심사 사례집



차 례

1. 계약심사 개요

- I. 2013 계약심사 실적 _ 5
- II. 2014 추진계획 _ 8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토목공사 _ 13
- 건축공사 _ 45
- 건설기술용역 _ 63
- 학술연구용역 _ 73
- 일반용역 _ 85
- 물품구매·인쇄 _ 105
- 시·군 자체심사 사례 _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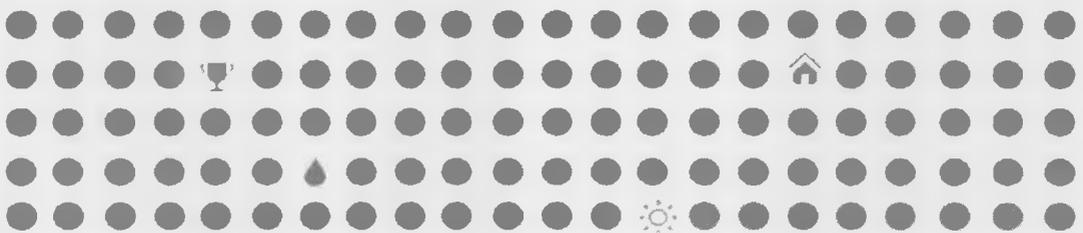
3. 부록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_ 137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_ 151

Part 1

계약심사 개요

- I. 2013 계약심사 실적
- II. 2014 추진계획



I | 2013 계약심사 실적

□ 총괄

● 연도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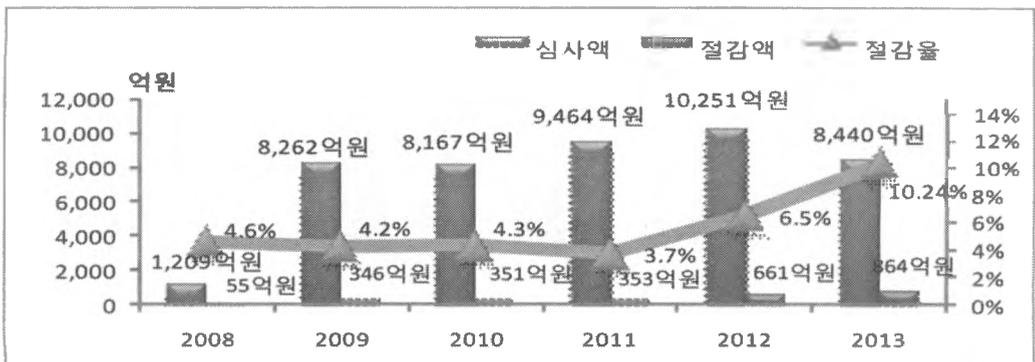
구분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고
계	3,975	4,579,266	4,316,172	263,094	5.7%
2013	836	844,001	757,588	86,413	10.2%
2012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2011	917	946,399	911,065	35,334	3.7%
2010	596	816,678	781,602	35,076	4.3%
2009	526	826,172	791,566	34,606	4.2%
2008	66	120,899	115,359	5,540	4.6%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절감액	%	건수	절감액	%	건수	절감액	%
계	2,391	201,548	5.4	1,084	57,731	7.3	500	3,815	8.1
2013	498	72,406	10.6	220	12,943	8.7	118	1,064	9.8
2012	612	50,761	6.1	245	14,071	7.9	177	1,293	6.9
2011	603	23,529	3.1	231	11,187	6.4	83	618	10.0
2010	329	23,703	3.7	208	10,958	6.5	59	415	9.0
2009	287	25,679	3.7	178	8,511	7.1	61	416	6.3
2008	62	5,470	4.5	2	61	18.1	2	9	5.4

> 연도별 변동추이



2013 심사실적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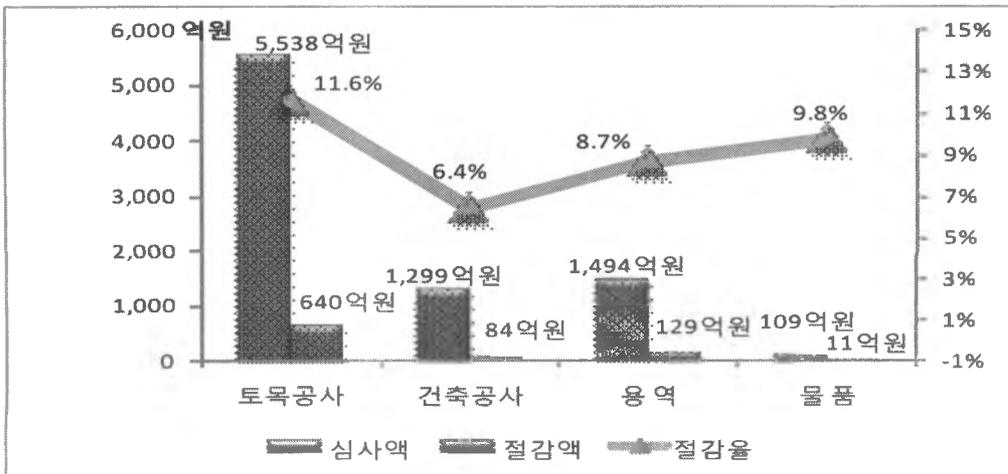
구 분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836	844,001	757,588	86,413	10.2%
토목공사	406	553,788	489,752	64,036	11.6%
건축공사	92	129,929	121,559	8,370	6.4%
용역	220	149,399	136,456	12,943	8.7%
물품	118	10,885	9,821	1,064	9.8%

●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계	836	844,001	757,588	86,413	10.2%
본청	107	38,232	35,592	2,640	6.9%
사업소	113	50,881	46,982	3,899	7.7%
출연기관	26	7,120	5,037	2,083	29.3%
시·군	590	747,768	669,977	77,791	10.4%

> 유형별 변동추이



□ 주요사례

- 자체 심사기준 적용으로 용역분야 예산절감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폐콘 14.4천원, 폐아스콘 15.1천원)
 -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산정방식 개선(업체 산술평균)
 - 학술연구용역 경비 기준단가 마련(7개 비목)

- 계약심사 절감액 재투자 유도
 - 심사부서 : 절감액 예산부서 통보(월별)
 - 예산부서 : 자체 검토 후 예산 감배정, 추경 반영 등

- 절감액 BEST
 - ○○군 ○○천 ○○강 사업(18.4억원)
 - △△사 △△도시 ○○사업 수목이식공사(17.5억원)
 - △△시 소하천 정비 수립 고시용역(13.6억원)
 - ○○군 △△산 탐방로 조성사업(13.2억원)
 - ○○군 △△공원 토목,조경공사(13.1억원)
 - △△시 △△나루 조성사업(12.6억원)

- 절감률 BEST
 - ○○군 ○○조성 토목,조경공사(84.7%)
 - △△원 ○○비료 구입(76.8%)
 - ○○군 ○○보부상 거리 조성사업(62.1%)
 - ○○군 ○○공원 조성공사 감리용역(50.8%)
 - ○○사 ○○도시 ○○사업 수목이식공사(45.6%)
 - △△시 ○○벨트 조성사업 수목이식공사(43.2%)

II | 201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정한 계약심사로 사업원가의 적절성과 적법성 확보
- 계약심사 전문화로 심사능력 조기정착
- 재정절약 분위기 확산 및 절감예산의 일자리창출 재투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34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심사부서의 기능

-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물량 적정산출 여부
 - 원가계산 방식, 제경비 요율,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견적가, 가격정보지 등), 노임의 적정성
 - 실적공사비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사업장에 적용
 - 부적정 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은 절감하되, 발주금액의 과소 책정으로 부실공사 예상시 적정금액으로 조정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사
 - 증감금액 기준은 ESC증가분을 제외한 금액
- 전기,소방,기계,통신 등의 전문공사는 도 및 시·군 대상기관 발주부서 자체 추진
 - 발주기관 및 부서 내부인력 활용
 -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 심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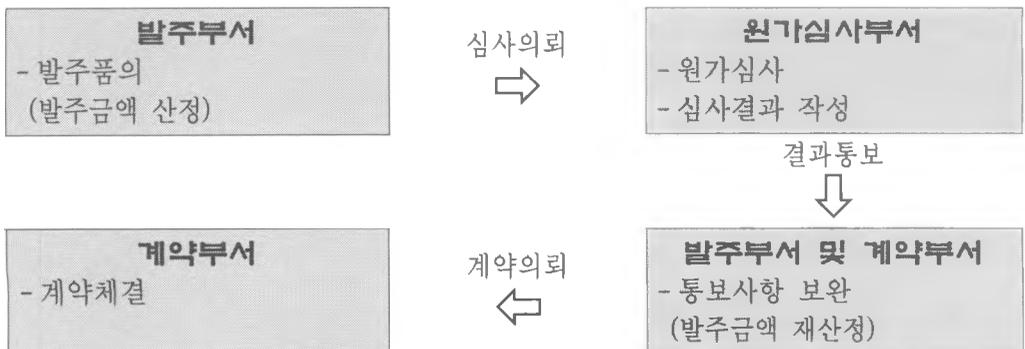
- 대상기관 : 도, 공기업, 출연기관, 시·군(보조사업)
- 의무적 심사대상

대상사업		도	시·군
원가심사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 5억 원 이상 ■ 전문공사 : 3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 3억 원 이상 ■ 전문공사 : 2억 원 이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 2억 원 이상 ■ 일반·학술 : 1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 원 이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 이상 공사, 10% 증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 이상 공사, 10% 증가시

- 심사제외 대상
 -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사업
 - ✓ 조달발주,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100억원 이상) 사업
 - 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기타 별도의 수수료를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사업의 성격등 심사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업 등
- ※ 제외대상 사업 : 별표1

□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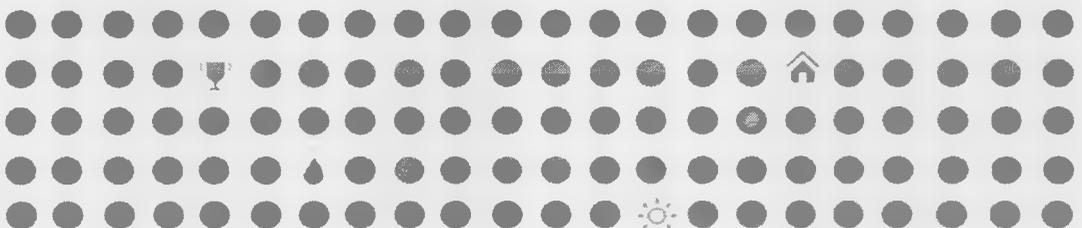
- 흐름도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건설기술용역
- 학술연구용역
- 일반용역
- 물품구매·인쇄
- 시·군 자체심사 사례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토목공사



○○신도시 건설사업 수목이식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공사
- 사업량 : 수목이식 A=4.898km²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840,000	2,090,000	1,750,000	45.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이식수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설계시 반영될 공종으로 이식수목조사 제외 - 28.22ha → 0ha
수목 이식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이식(굴취, 근원직경식재) 개정된 건설표준품셈 적용 - 2010년 조경공사적산기준(6-9-3) → 2013년 건설표준품셈(토목4-4-2) • 수목운반 단가 재산정 - 덤프트럭 4.5ton → 8.0ton 적용 • 수목이식 자재 녹화마대(수간보호), 보통철선 제외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야생수목을 가이식후 본이식 계획하였으나 금회 본이식으로 1,750백만원 예산 절감(기반영) - ○○○○○○과-21647(2012.9.28)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공 L=2.0km, 옹벽 L=22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422,170	7,376,700	1,045,470	12.4%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축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 절토 면고르기 식생매트설치 구간 제외(식생매트 설치 면고르기 포함)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라클스톤네트 설치 소운반 제외(설치품에 소운반 포함)
하도 정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울 설치공 나무말뚝 박기 수량 재산정(587 → 385개) • 여울 돌놓기 시간당 작업량 조정(8 → 12대)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 구조물 터파기 높이별 단가 재산정(일괄 터파기 단가 적용) • 구조물 터파기 기계90%+인력10% → 기계100% 적용 • 되메우기 기계90%+인력10% → 기계100%, 다짐장비 램머 → 핸드가이드식 롤러 적용 •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 조립 적용 • 옹벽 가시설 H파일 천공 수량 조정(L=100m → 84m) • 보도교 데크설치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 상류측 L형 옹벽(L=155.6m) → 시·중점부 반중력식 옹벽 공법 변경 -L형 옹벽 L=137.5m + 반중력식 L=18.1m

항 목	심 사 결 과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데크설치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하천 유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관 및 PC관 사급자재 → 관급자재 적용 • 접합정 산석붙이기 제외(문양거푸집 적용) • 강관추진공 일일작업량 조정(Q=0.9m → 0.6m/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강관추진 내관부설용 레일설치 잡철물제작설치 → 철물설치 적용 • 톤마대 쌓기 및 헐기 1차 톤마대 만들기후 공중별 유용 적용
하천유지용 수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굴삭기 작업효율 E=0.25 → 0.4 조정 • 아스팔트 포장구간 포장공 인력식 소규모 → 기계포설 적용 • 교통신호수 투입기간 재산정(150 → 126일)
오수 간선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용수토사) 보통인부품 1.2배 제외 • 터파기 인력 100% → 기계(백호우 0.12㎡) + 인력 적용 • 조립식간이 흙막이 공 높이(H=3~4m) 재산정 • 수중모터펌프 사급자재 → 관급자재 적용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 가설사무소, 창고, 안전시설 경비성 단가 적용
골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석(2목, 4목, 6목) 사급자재 → 관급자재 적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근콘크리트 깨기 단가 동일 적용 • 이미지 가벽 A, B 재견적처리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호)

○○진입도로 확 · 포장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도로 확 · 포장공사 L=385m, B=8.5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89,720	327,330	62,390	16.0%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철근콘크리트깨기 단가 백호우 E=0.35 → 0.45 적용
부대공	• 가시설 H파일 + 어스앵커설치 → H파일 자립식 적용
사급자재	• 혼합골재(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자재 관급자재 구입 적용
기 타	• 폐기물처리비 단가 조정 -폐콘크리트처리비 18244원 → 14,400원 -폐아스콘처리비 19819원 → 15,100원 -혼합폐기물처리비 40,044원 → 19,200원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생태공원 조성 A=39,12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408,880	2,834,950	573,930	16.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면보호공 거적 + 씨드스프레이 단가 2013년 표준품셈 적용 • 절토사면녹화 부착망 자재 할증을 조정(30% → 15%)
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메우기 및 다짐장비 램머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적용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개비 조형물 자재 규격 변경 - H=3,800~4,500 → H=2,500mm • 합성목재데크설치 → 목재조립 및 설치(마루널갈기) 적용 • 데크설치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가설사무실 및 창고 경비성단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산림습지 특원사업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습지복원 A=16,700㎡, 탐방로정비 L=80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710,100	1,548,700	161,400	9.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석·자갈(현장채집), 깎돌·돌(현장채집) 운반 지게운반 → 기계운반 적용
헬기 운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 왕복이동비(김포~구미) 제외(상주 헬기 대기장 이용) • 헬기 인양작업 톤백사용 50%재활용 적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구 산악할증율 조정(50% → 32% 적용) - 일 8시간 작업중 왕복이동 3시간 제외(5시간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37호)

○○간 선형개량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선형개량 L=3.02km B=8.0~9.5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335,470	2,080,770	254,770	10.9%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토운반 적재장비(로우더) 1.72 → 2.87㎡ 적용 •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 다짐장비 램머 → 핸드가이드 롤러 적용 • 치환토 수량 조정(변화높이 → 평균높이 2.0m 적용)
배수공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거, U형개거, J형측구, 옹벽 단가 재산정 -레미콘타설 인력 → 펌프차 타설 적용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 조립 적용(취입보) • U형개거 옹벽 접합 구간 옹벽접합부 거푸집 제외 • 주철뚜껑 사급자재 → 관급자재 구입 적용
교량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멘교 벽체 합판거푸집(3회) → 유로폼(벽체) 적용 • 라멘교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 조립 적용
데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설치 → 목재조립 및 설치(마루널갈기) 적용 • 데크설치 잡철물체작설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견포장 길어깨 포장 → 본선 포장 적용(신설도로) • 안전시설물 경비성단가 적용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신호수 경비성단가 적용
제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료 0.79% → 0.87%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연결도로 개설사업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도로개설 L=4.460km, B=10.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648,400	6,020,400	628,000	9.5%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성토고 1m이상인 구간 포장깨기 제외 • 횡단면도 추정암선 재작성(토량수량 재산정) •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 다짐장비 램머 → 핸드가이드 롤러 적용 • 구조물터파기 기계100% 및 브레이커 작업량 조정 • 사면보호공 면고르기 제외(브레이커 작업구간)
배수공	• L형측구 인력 → 기계타설 적용
사 면 보강공	• 사면보강(소일네일)길이 및 단가 재산정 • 사면녹화 부착망 자재 할증율 조정(30% → 15%)
터널공	• 동물 이동경로 종단 구배 조정(1:2 → 1:1.5) -생태터널 길이 재산정(L=29m → 24.15m) • 보강콘크리트 수량 재산정 및 사급자재 → 관급 구입 적용 • 그리드 설치 단가 재산정
포장공	• 성토 2m이상인 구간 동상방지층 제외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공 L=2.678km, 교량 1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043,000	3,622,000	421,000	10.4%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적용 • 2012년 단가 → 2013년 상반기 기준단가 적용
축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토운반장비 덤프운반 15→24ton 적용 • 거적덮기 품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독마루 포장 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계좌안1지구 L=110m, 2지구 L=201m, 3지구 L=70m - 감계우안1지구 L=305m 포장 구간 제외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 계획고는 홍수위선까지 설치 조정 • 환경블럭설치 품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배수시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관 모르타르 접합 → 고무링 접합 적용(2013년 개정)
하천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 터파기 높이별 구분없이 적용

항 목	심 사 결 과
부 체 도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체도로 경계블럭 제외
교량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 조립 적용 교각, 교대 기초부 채움콘크리트 제외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물헐기(철근) 브레이커 작업량 및 단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께 30cm이상 Q=2.7㎡/hr, 30cm미만 Q=3.3㎡/hr 적용 - 철근절단 → 장애물 제거 폼 적용 세륜세차시설 경비성 단가 적용, 설치 3 → 2개소 조정 잡석, 혼합쇄석 자대단가 재견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장비 덤프운반 15 → 24ton 적용 조립식가설 사무실, 창고, 숙소 규모 9~30억 적용 조립식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별도 계상 시공측량비 제외
재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륜세차시설 설치로 환경보전비 제외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도로개설 L=330m(B=15.0m), L=110m(B=8.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91,500	276,400	115,100	29.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메우기및다짐 장비 램머 → 롤러 적용 • 사토처리(토사) 수량 재산출(체적환산계수 수정 적용)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원식횡단보도 아스콘포장(표층, 기층) 단가 재산정 인력식소규모장비 → 기계시공(본선포장) • 잔디식재 평떼 → 줄떼 적용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식재 유기질비료 단가 수정
자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팝나무 관급자재 구입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문화벨트 조성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건축연면적 118㎡ 1동, 토목·조경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923,895	1,660,943	1,262,952	43.2%

□ 주요 심사내용

- 건축공사

항 목	심 사 결 과
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비 : 0.5% → 0.3%(조경공사 기준)
토공 및 지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토처리비 삭제(토목공사 성토로 활용)
금속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시트(3t, 불소도장) : 시중물가지 조사가 적용 - 143,000원/㎡ → 105,000원/㎡
조달청 가격정보 ('13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에서 공표('13상반기)한 조사단가 적용 <li style="padding-left: 20px;">: 화강석붙임 <li style="padding-left: 20px;">• 습식,바닥 : 노무비 67,706원/㎡ → 30,100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습식,벽 : 노무비 88,449원/㎡ → 43,800원/㎡ <li style="padding-left: 20px;">: 테라조판붙임 <li style="padding-left: 20px;">• 습식,바닥 : 노무비 48,679원/㎡ → 30,100원/㎡

● 토목공사

항 목	심 사 결 과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물제작,설치비(별자리,달), 탑조형물설치비 ✓ 관급자재로 구매(제조,설치 조형물로서 도급공사에서 제외) ✓ 전시공사 : 건축물현장정리 삭제(카설공사에 중복산정) • 경유 1,564.9원/L(한국석유공사 경북지역 공시가격) • 먹매김 : 0.0495인/m² → 0.041인/m² • 운반비는 일괄경비로 계상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기계90%+인력10% → 기계100% • 혼합골재(D40mm) 단가 통일 적용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 토사운반 중복 계상으로 삭제
식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비료 단가 조정 • 잔디식재 평떼 → 줄떼(잔디마당 제외) 적용
시설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데크, 데크로드, 전망데크, 휴게데크 단가 재산정 목재가공설치 보통구조(중) → 마루널갈기 적용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강석판석붙임 단가 재산정 조달청 공표 조사단가 적용 모르타르 배합, 바름폼 삭제(붙임 품에 포함) • 점토블럭포장, 디딤석, 경계석 단가 재산정 터파기, 잔토처리 삭제(성토구간으로 불필요 공정) 점토블럭포장 모래부설 삭제(포장품에 포함) 점토블럭포장 콤팩터, 굴삭기 0.04hr → 0.026hr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하천정비 L=2.804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313,100	2,970,500	342,600	10.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성토(토자) 부설품 중복 계상 • 유용성토(덤프) 단가 재산정 덤프15ton → 24ton (t1=10분 이상 유류대 공제 누락) t4=0.42 → 0.15 • 유용잔토운반 사토장정리비 삭제 • 배수공, 호안공, 교량공 사토 수량산출 체적환산계수 누락 • 무근/철근 콘크리트깨기 작업량(Q) 최대치 적용 • 철근콘크리트깨기 고재 처리 누락 • 도로 순성토운반 삭제(하천 유용잔토운반 중복 계상)

항 목	심 사 결 과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트리스 계비온(1×1×0.3) 단가 재산정(표준품셈13-2-4) • 계비온(1×1×1) 단가 재산정(표준품셈13-2-3) • 식생매트 단가 재산정(표준품셈13-3)
교량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설치 잡철물설치 → 앵커고정식 난간설치 적용 ✓ • 교면방수(도막식) 특별인부 삭제 ✓ • 교량집수구, 교명주 시공포함 견적으로 경비성 단가 적용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표층 비닐깔기품 삭제(포설품에 포함) ✓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도설치 연장 조정 L=100m → L=50m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데크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공조 조립설치 적용 • 잔디식재 평떼 → 줄떼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흙각기 19,268㎡, 흙쌓기 12,026㎡, 석축 L=165m,
보강토옹벽 L=243m, PC BOX L=61m, 부대공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008,000	873,100	134,900	13.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깨기 단가 경상북도 설계기준 적용 재산출 • 흙쌓기 토량상태 자연상태 → 다짐상태 수정 • 토공유동표 작성시 표토제거 공제 누락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토옹벽 그리드내 관로 매설구간 보강토옹벽 → 석축
오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 구간내 오수관 인도로 매설 위치 조정(약목초~약목중) • No.13+10~No.18+10(우측) 균유지 오수관 매설 삭제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라투수콘크리트 관급 구입 적용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바라설치 경비성단가 적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토운반, 자재운반 덤프트럭 15ton → 24ton • 보조기층재, 모래 단가 재견적 처리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전원마을 조성 20,15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65,388	711,118	54,270	7.1%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적표 작성시 표토제거, 별개제근 수량 누락 • 잔디식재 → 시드 스프레이 + 거적덮기 • 순성토운반 단가 재산정 $t1 - 10분 이상 유류대 공제 누락$ $t4 - 0.42 \rightarrow 0.15$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천단콘크리트 유로폼 → 합판6회
관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기계90%+인력10% → 기계100% • 우수관로 수밀시험 삭제 • 우수처리시설 시운전 12주 → 4주 조정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쉬웬스설치 단가 재산정 특별인부 0.6인 → 0.23인 보통인부 0.5인 → 0.22인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교 개체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교량개체 L=134m, B=11m(8.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325,130	1,239,000	86,130	6.5%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콘크리트깨기 작업량(Q) 최대치 적용
우배수공	• 모래기초 부설 인력 → 기계
교량공	• 인도용 난간 설치비 삭제(관급자재 현장설치도 중복 계상) • 공사용가도 톤마대 수층부의 구간 설치 제외 • 가도용 파형강관, 가시설 강재 손료 6개월 → 3개월 적용 • 세굴방지블럭 설치 중량구조물 → 블럭거치(2ton미만) 적용
구조물공	• L형옹벽 레미콘 타설 인력 → 펌프차 적용
포장공	• 보도블럭 포장 표준품셈(12-3-3) 소형 압블럭 적용
부대공	• 공사설명판, 안전표지판 경비성단가 적용 • 제작장 부지임대료 6개월 → 3개월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공원조성 A=99,800㎡, 주차장조성 A=10,28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269,858	4,270,560	999,298	19.0%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흙깎기(절토부) 수량산출시 표토제거 수량 공제 누락
우수공	• BOX암거 강관비계 직고 2m 미만 제외
구조물공	• 옹벽 철근가공 및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적용
보 도 교량공	• 가도설치 연장 조정(성토, 흙관, 마대 조정) • 가도설치 PP마대쌓기 및 헐기 → 톤마대 적용
조경공	• 목재데크 설치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관목군식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수간폭(30) 16주/㎡당 → 14주/㎡당 • 초화류 수량 36본/㎡당 → 32본/㎡당 적용
자재대	• 사급자재 → 관급 구입 적용 교량조형물, LED 터널, 입구문주, 테마조형물, 수상조형물, 아피통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소하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호안블럭 L=1,658m, 중력식옹벽 L=92m
 암거 L=21m, 라멘교 2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056,600	869,300	187,300	17.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선부와 교량부 토공 수량산출 중복 계상 • 구조물터파기 추정암반선 하단부 삭제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력식옹벽 레미콘타설 인력 → 펌프차 타설 적용
자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 관급자재 구입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테마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오수관 L=297m, 상수관 L=476m, 아스콘포장 A=18.4a
점토블록포장 A=1,034㎡, 교량 L=17m, 호안 L=291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85,900	830,900	155,000	15.7%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토운반 덤프15ton → 24ton • 터파기 기계90%+인력10% → 기계100% • 사토 타공정이월수량 체적환산계수 누락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크로드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적용 • 앓음벽, 족욕장 석재판붙임(습식) 조달청 공표 조사단가 적용 • 조경석계단 조경석쌓기 단가 전석쌓기 → 돌붙임 적용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판거푸집(4회) → 유로폼(벽체) 적용 • 옹벽 철근가공및조립 복잡 → 보통 적용 •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적용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석쌓기/조경석계단 단가 전석쌓기 → 돌붙임 적용
자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개수로관, 소나무 관급자재 구입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호안정비 L=4.6km, 교량 3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435,000	4,970,900	464,100	8.5%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메우기 기계90%+인력10% → 기계100% • 철근가공및조립 → 공장가공 적용
축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근콘크리트깨기 작업량 Q=4.6 → 5.9m³/hr 조정 • 본선부와 교량부 토공 수량산출 중복 계상 • 사토운반 수량산출시 폐기물처리 수량 공제 누락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굴방지블럭 설치 블록거치(층적) → 블록거치(난적) 적용 • 자연형계단설치 작업반장 삭제
호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리형개비온 설치 사각형돌망태 적용(표준품셈13-2-3)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벚나무 관급 구입 적용 • 법면보호공 평떼 → 줄떼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서원 주변 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배수공 암거 L=15m(1.0×1.0), 강관압입공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20,000	559,100	260,900	31.2%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배 수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횡단 하수도 설치를 위한 공법 변경 강관 압입추진(Φ914.4×12t, 총 L=160m)에 의한 가시설 설치 후 하수관(1.0×1.0, L=15m)설치 → 강관 압입추진(Φ1200mm, 총 L=20m)설치시공 및 흙관설치(Φ800mm, L=20m)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불필요한 가시설 적용으로 예산낭비,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 가능한 가시설 공법으로 적용

○○구역 확장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관로매설 L=16.967km, 배수지, 과압장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392,860	1,189,460	203,400	14.6%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기계(90%) + 인력(10%) → 기계(100%)
구조물공	• 콘크리트 방수 : 아스팔트 방수 → 프라이머바름
포 장 공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불연속 구간 → 연속 구간
차선도색	• 용착식 도색 → 페인트식 도색

□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2013년도 설계실무요령(경상북도)

□ 심사 착안사항

- 기계시공 가능한 토공 기계(100%) 적용
- 구조물 방수에 대하여는 프라이머 바름 적용시공
- 공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삭시공에 대하여는 연속 적용
- 지방지역은 페인트식, 일교통량 10,000대 이상인 시가지지역은 용착식 적용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수해상습지 개선 4개소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20,840	183,580	37,260	16.9%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정리 토공장비 계수(도자) f=0.77, E=0.6, V1=40, V2=46 → f=0.8, E=0.7, V1=75, V2=98
호 안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블럭 설치 : 피복 복토 인력 흠다지기 제외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2013년도 설계실무요령(경상북도)

심사 착안사항

- 관련 기준에 의한 건설기계 계수 적용
- 피복 복토 흠다지기는 식생블럭 설치품에 포함되어 이중적용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위험도로 구조개선 L=399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14,140	311,200	102,940	24.9%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선형 조정 → 기존 종단경사 범위내에서 선형조정(계획고 상승)으로 절취량 및 사토량 감소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더제작 : 용접 단위수량 산출근거 불분명 → 실제 용접수량 산출 적용
배 수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종단선형 조정에 따른 계비온 물량 제외
부 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자재 소운반(레미콘, 골재 등) → 차량 진입가능으로 반영 제외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가장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으로 실시설계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1개소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18,700	383,400	135,300	26.1%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 공	•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기계(90%) + 인력(10%) → 기계(100%)
포 장 공	•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품 적용 → 적용제외
부 대 공	• 교통표지판 : 신설 → 기존 표지판 활용 설치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 2013년도 설계실무요령(경상북도)

심사 착안사항

- 가장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으로 실시설계
- 관급자재의 납품조건을 확인하고 이중계상된 설치품 제외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소하천 제방정비 L=1.071k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000,000	1,441,850	558,150	27.9%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호 안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떼 : 현장내 소운반 → 적용제외 • 호안블럭 : 쌓기 → 블럭 붙이기 적용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 가공조립 수량 착오 → 정정 적용
교 량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면방수 : 침투식 2회+도막식 → 침투식 2회
자 재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 및 사급자재 산출 오류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줄떼시공품내 현장내 소운반품 포함 됨
- 시공방법과 일치하는 품(호안블럭 붙이기) 적용
- 교량형식에 적합한 교면방수공법 적용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도로개설 L=0.32k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541,800	5,287,500	1,254,300	19.2%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측구, V형측구, 다이크, 흡관 등 합판거푸집 4회 → 유로폼 적용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동바리(테크휘니셔용) → 강관동바리 • 합판거푸집 4회 → 유로폼 • 철근가공조립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강교제작 품 : 연속플레이트거더 → 박스거더 • 강교운반비 : 공장~제작장 → 적용제외(현장도착도)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비 이중계상 : 제경비 및 세륜세차시설 • 토지임대료 계산 : 1년×12개월 → 1년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04호)

심사 착안사항

- 가장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으로 실시설계
- 본 공사에 적용된 교량공법은 형식상 박스거더교에 해당됨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건축공사



○○서원 주변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지붕, 담장 등 서원 보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56,171	437,275	18,896	4.1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비각이전	• 축부재, 포부재 해체 및 조립 : 3.6m이하 적용(부재 최하단 기준)
석공사	• 거친돌해체 및 쌓기 : 인력 → 기계
운반비	• 경운기운반 → 1톤 트럭
조달청 단가적용	• 조달청 조사단가 적용 : 석재판바닥붙임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심사 착안사항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목공사 부재 높이별 할증 적용
- 현장여건 감안한 기계 적용 검토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건축연면적 791㎡ 1동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198,263	1,146,970	51,293	4.28%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토처리 : 토목공사와 동일 단가적용(4,66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판거푸집 사용횟수 : 3회 → 4회(단,계단부분은 3회)
조적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m 이하 기준 적용 및 보통인부(비빔) 삭제 - 0.5B벽돌쌓기 : 조적공 1.6인/천매, 보통인부 0.56인/천매 - 1.0B벽돌쌓기 : 조적공 1.46인/천매, 보통인부 0.52인/천매
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합성목데크설치 - 잡철물제작설치(철재)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 - 녹막이페인트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부지내 각 공종간(건축, 토목) 토공항목 공통단가 적용
- 합판거푸집 사용부위별 적정 횟수 적용
- 조적공사 개정품셈 적용 등

○○마을불상군 주변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화장실 13㎡, 관리동 32㎡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97,867	568,866	129,001	18.49%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제비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의 1.81% + 3,294,000원 → 2.48%
가설공사	• 가설덧집 삭제
운반공사	• 항공기이동비 : 4회(8,000천원/회) → 1회(12,000천원/회) • 유조차 사용료 : 4일 → 2일
기 타	• 열경화성수지천정재, 화장실칸막이 : 노무비 삭제(시공도) • 지붕물청소 삭제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심사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금액 대비 적용비율 검토
- 보수공사 공정 및 공기 감안하여 가설덧집 적용 검토
- 항공기 기종별로 비교하여 비용 산정

○○사찰 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관음전, 비로전, 나한전, 후원채, 목조실 번와보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99,021	474,281	24,740	4.9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운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재 소운반(경운기) 삭제 • 폐기물 소운반 : 경운기 → 카고 8톤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구손료 : 노임할증 금액에 대한 공구손료 제외 ※ 건설표준품셈1-12 (공구손료 및 잡재료)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심사 착안사항

- 현장여건 감안하여 운반기계 선정
- 공구손료 산정시 노임할증 금액에 대한 적용 제외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관람로포장, 난간교체, 인공암반정비, 옹벽설치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72,433	513,810	58,623	10.2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1.81% + 3,294천원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48%
인공벽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암벽(G.R.C) : 견적서상의 기업이윤, 공과잡비 삭제(원가계산서에 산정)
철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가공조립(60톤미만) : 롤세입 기준 적용 - 철골공 2.232인/톤 → 1.7608인/톤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작업할증 : 50% → 25% ※ 건설표준품셈 1-16-4(품의 할증)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부지내 각 공종간(건축,토목,조경) 토공항목 공통단가 적용
- 야간작업할증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조정
- 견적서상 이윤, 공과잡비 이중계상 여부 검토

○○화장장 재건축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연면적 1,822㎡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57,827	467,027	90,780	16.2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 잔토처리 : 토목공사로 유용 (767㎡ → 20㎡)
수장공사	• 건식벽체설치, 천창하부구조, 합성목데크설치 - 잠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내력식) • 합성목데크설치 : 마루널깎기(품) 적용 - 건축목공 : 0.09인/㎡, 보통인부 : 0.02인/㎡
기계설비	• 부스타펌프(인버터) 2대 관급구매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사업장내 토목공사와 연계 검토로 잔토처리량 절감
- 각종하지철물은 구조(간격), 재료규격, 시공방법 등 종합하여 노무비(품) 적용

○○고분군 정비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훼손 고분 48기 정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37,391	511,453	25,938	4.8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제비율	• 간접노무비 : 10.5% → 8.9%
토공사	• 토사절취 : 경질토사 → 보통토사 - 보통인부 0.22인/㎡ → 0.16인/㎡ ※ 건설표준품셈 3-1-1
운반공사	• 경운기 운반 - 적재, 공차 속도 : 불량 → 보통 ※ 건설표준품셈 11-30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지질조사 자료 분석으로 적정한 토질 적용하여 토사절취 비용 산정
- 경운기 운반시 현장여건(도로폭, 경사도 등) 감안하여 적정 단가 산출

○○복지센터 신축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복지센터 885㎡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382,978	1,292,483	90,495	6.5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 기계80% + 인력20% → 기계100% • 잔토처리 삭제 : 토목공사 순성토로 유용
철근콘크리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판거푸집 사용횟수 : 3회 → 4회
금속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복합패널 : 시중물가지(물가지자료) 조사 107,000원/㎡ → 105,000원/㎡(시공도)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배수로, 집수정설치 : 합판거푸집4회 → 유로폼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알루미늄복합패널 견적서와 시중물가지조사가를 비교하여 단가 적용
- 시공여건 감안하여 거푸집 종류 및 횟수 적용

○○마을 보수정비사업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전통가옥 5채 보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78,000	654,539	23,461	3.4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 대문채, 류○○가옥 창고, 류○○가옥 창고 - 강관외부비계, 비계다리, 비계발판 : 6개월 → 3개월
기초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가옥 창고 - 거친돌해체, 거친돌쌓기 : 인력 → 기계
운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토 : 운반비 삭제 (도착도 적용)
지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가옥(사랑채) 한식기와와이기 - 맞배지붕 → 팔작지붕 • 한식기와 : 관급구매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심사 착안사항

- 각 동별 공사기간 감안하여 비계설치기간 산정, 현장여건에 따른 기계적용
- 지붕형상에 따른 기와이기 노무비(품) 적용

○○종묘 보급센터 설치공사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장
- 사업량 : 온실 연면적 972㎡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96,131	755,273	40,858	5.1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철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가공조립 : Built up, 많은구조 적용 - 철골공 7.45인/톤 → 2.976인/톤 ※ Built up은 소요치수 및 형상으로 재단,용접하여 사용하는 부재
천창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파이프설치 -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내력식)
조달청 가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에서 공표('13상반기)한 조사단가 적용 - 유리끼우기및담기(AL,PL 5mm이하)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심사 착안사항

- 철골부재의 접합방법에 따라 철골가공조립 노무공수 산정
- 축파이프 설치의 간격, 재료규격, 시공법 검토하여 품셈 적용

○○복지타운 건축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연면적 3,916㎡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399,537	5,146,533	253,004	4.69%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관틀비계매기 : 3,071㎡ → 454㎡ - 공연장만 적용(강관말비계 추가설치)
토 및 지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토처리 - 토목공사 순성토 142㎡ 제외 - 잔토처리거리 : 10km → 5km
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음재 설치/벽체 : 견적서상 노무비를 품셈적용 산출 -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1인
공연장 음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풍나무 우드플로어링 - 건설표준품셈(마루널깔기) 적용 건축목공 : 0.09인, 보통인부 0.02인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내부공사의 여건(높이, 천정시공 난이도 등) 검토로 적정 비계공법 선정
- 건축, 토목공사 연계하여 토공사 검토 및 실제 운반거리 반영

○○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다목적체육관 3,735㎡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5,068,030	4,704,205	363,825	7.1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철근콘크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 등 개구부 공제하여 물량 재산정 - 레미콘 : 3,945㎡ → 3,910㎡ - 거푸집(유로폼) : 9,246㎡ → 8,895㎡
철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공 : 1.7608인/톤 → 1.4086인/톤(간단)
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음판설치(내장공) : 0.104인/㎡ → 0.08인/㎡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 프레임(견적) : 고재(강설) 산정하여 공제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개구부 물량(레미콘, 철근, 거푸집 등) 공제 여부 확인
- 견적서상 고재(강설) 공제 여부 확인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재래시장 아케이드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96,131	755,273	40,858	5.1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철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골밴딩 삭제 : 철골가공조립(품)에 포함 • 부대철골가공조립 : 철골공 4인/톤 → 3인/톤(적은구조)
철근콘크리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현장가공및조립 : 복잡 → 보통(13mm이하가 50%미만 적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가판대 : 물품(제조)로 별도발주(본 공사에서 분리) • 경 유 :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적용 : 1,569원/L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철골밴딩은 철골가공조립(품)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여 산정
- 철근현장가공및조립 철근 규격 및 수량에 따라 난이도 적용
- 물품(제조) 해당 여부 검토하여 공사와 분리 발주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연면적 711㎡ 신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796,131	755,273	40,858	5.1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 내부수평비계 → 내부수평비계(복층부)+내부말비계(단층부)
조적공사	• 미장벽돌연결철물 - 노무비 217,260원 삭제(벽돌쌓기품에 포함)
철골공사	• 철골가공조립 : 적은구조 난이도 0.8 적용 - 1.7608인/톤 → 1.4086인/톤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내부공사의 여건(높이, 천정시공 난이도 등) 검토로 적정 비계공법 선정
- 건설표준품셈의 벽돌쌓기(품)의 범위에 연결철물설치 포함되어 중복

○○우익사 보수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정면 6칸, 측면 3칸, 팔각지붕 문화재 보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30,000	400,818	29,182	6.79%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보호막 삭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참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발판설치 : 노무비 삭제(강관비계매기 일위대가에 포함)
벽체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흙벽 해체, 설치 : 3.6m이상 할증물량 재산정 (대량 윗 부분만 할증 적용) 59.69㎡ → 23.52㎡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건설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심사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검토
- 문화재품셈에 의거 흙벽 설치시 기준높이 따라 할증 적용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건설기술 용역



○○지구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전면책임감리 1식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25,000	533,000	392,000	42.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감리원수 재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에 의한 책임감리 → 시공감리 적용 - 감리사 52.98(인·월) → 감리사 27.55(인·월)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
-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0호)

○○구역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현장조사실시설계·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428,700	1,174,600	254,100	17.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현지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로부분 지형측량 제외(수도노선측량 품에 포함) • 측량 보조인부 건설보통인부 → 측량협회 측부 적용 • 관로부분 시추 깊이 조정 5m → 3m(자갈·암반층 제외) • 폐공비 단가 재산정(표준품셈 20-7) • 암반층 표준관입시험 제외 • 시추조사 해석비 제외(천공 품에 포함) • 측량비, 토질조사비는 직접경비에 해당되므로 제경비 및 기술료 제외
도시계획 시설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검토 항목 제외(실시설계 과업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산지전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업 품에 포함되므로 제외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90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원 조성공사 시공감리용역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시공감리 1식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72,569	232,305	240,264	50.8%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에 따른 총감리원수 재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감리(보통) 100% → 검측감리(단순) 100% - 감리사 25.48인·월 → 13.23인·월 • 기술지원감리원 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보통) → 10%(간단)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원 단가조정(83,975원 → 60,236원) 공사부문 보통인부 → 제조부문 보통인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
-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0호)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92,000	284,000	8,000	2.7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건축설계 대가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농장, 하우스, 자재보관소, 퇴비장, 도로,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1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단순) 공종으로 적용(요율 : 3.846%) • 주택, 교육시설 등(공사비 3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보통) 공종으로 적용(요율 : 4.276%) ※ 공공발주사업에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건축설계 대가요율) 참조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6.19)
- 공공발주사업에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심사 착안사항

- 건축물 동별로 공종 난이도를 각각 적용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건축 및 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75,972	648,758	27,214	4.0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설계대가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공사비 : 건축, 토목공사 통합 적용 - 건축 공사비의 5.563% → 5.492% - 토목 공사비의 3.117% → 3.005%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경비 : 115% → 110%(간단) - 기술료 : 30% → 20%(간단) - 사면재해 검토항목 삭제(평지)

심사근거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심사 착안사항

- 설계대가요율 적용시 건축, 토목공사 전체공사비를 기준하여 산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시 현지여건(사면 등) 감안하여 조정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과 업 량 : 전면책임감리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률
1,082,000	978,400	103,600	9.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감리원수 산출 건설공사 감리원수 보통의 공종 → 순한 공정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심사 착안사항

- 공사 주 공종이 부지조성공사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토목공사의 단순한 공종해 해당함

○○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과업량 : 하천정비 L=10km 실시설계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664,000	595,000	69,000	10.4%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조사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비 이중계상 수준측량 → 형현황측량 항목에 포함 제외
토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질조사비 과다반영 근거없이 10회 반영 → 2회 반영(1개소/공구)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90호)

심사 착안사항

- 조사측량 등 관련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 산출
- 불필요한 과업내용 제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과 업 량 : 하천정비 L=6.47km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 감 액	절 감 륜
1,625,000	1,371,000	254,000	15.6%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원수 산출 보통의 공종 → 단순한공종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사무원 급료 건설공사 보통인부 → 제조 보통인부

심사근거 및 기준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90호)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심사 착안사항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하천제방, 호안, 하도설치 사업은 단순한 공종에 해당됨
- 관련 규정에 의한 인부임 적용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학술연구 용역



△△레이저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용역

□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레이저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수립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200,000	191,437	△8,563	△4.28%
노 무 비	174,853	169,112	△5,741	△3.28%
경 비	15,924	13,497	△2,427	△15.24%
기 타	9,223	8,828	△395	△4.28%

□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인원 조정
- 경비조정
 - 유인물 산출내역서 조정
 - 회의비 산출내역서 조정
 - 교통 통신비 조정

□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 13)

△△댐 관광단지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규모 : △△댐 주변 관공단지 조성사업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235,144	196,235	△38,909	△16.55%
노 무 비	180,468	162,216	△18,252	△10.11%
경 비	27,371	24,675	△2,696	△9.85%
기 타	27,305	9,344	△17,961	△65.78%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참여 연구원 및 참여율 조정
- 경비 조정
 - 여비의 유가 조정 - 한국석유공사 지역별 기준
 - 유인물 산출내역서 단가 조정
 - 전산처리비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 13)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본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노무비내역서 4개 분야(문화관광,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별 용역수행 철저 이행

△△ 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규모 : △△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89,500	176,977	△12,523	△6.61%
노 무 비	146,240	140,812	△5,428	△3.71%
경 비	22,007	16,387	△5,620	△25.54%
기 타	21,253	19,778	△1,475	△6.94%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퇴직급여 총당금 조정 가산 산정
 - 인건비 참여율 조정
- 경비 조정
 - 여비 산출 내역서 조정
 - 현장조사비 산출내역 조정
 - 전산처리비 단가 조정
 - 회의비 단가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 13)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498,001	469,273	△28,728	△5.77%
학술용역	253,790	225,062	△28,728	△11.32%
기술용역(위탁)	244,211	244,211	△0	△0%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을 조정
 - 각 과제별 과업수행원의 등급별로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내여비 조정(공무원 여비규정)
 - 여비일수 조정 감
 - 여비등급 조정
 - 유인물비(중간, 최종보고서) 조정
 - 표지 인쇄 : 13매 → 5.5매 [7.5매 감(코팅 5매, 1색도 2.5매)]
 - 전산처리비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3.13)

기타사항

- 추가절감 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방영 후 발주

○○단지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단지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조성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98,859	179,237	△19,622	△9.87%
노 무 비	109,706	109,706	△0	△0%
경 비	79,684	66,016	△13,667	△17.15%
기 타	9,469	3,515	△5,955	△62.84%

주요 심사내용

- 경 비
 - 국외여비 산출 인원 조정
 - 국내여비 교통거리 조정
 - 회의비 횟수 조정 : 5회 → 4회
 - 조감도 제작비 조정 : 거래실례가격 조사 적용
 - 설문조사비 조정
 -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 5% → 2%
 - ※ 도정개발 연구원 2 % 이내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 13)

심사근거 및 기준

- 추가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시범어장 개발 연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어장 개발연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202,750	183,330	△19,420	△9.58%
노 무 비	92,257	79,114	△13,143	△14.25%
경 비	21,476	19,285	△2,241	△10.45%
기 타	89,017	84,981	△4,036	△4.53%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인원 및 참여율 조정
 - 연구원 참여인원 조정, 연구원, 연구보조원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내여비 조정
 - 해외여비 식비(기내식) 조정
 - 현장조사 횟수 조정
 - 회의비 산출 조정
 - 교통통신비 단가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13)

심사근거 및 기준

- 추가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공원 △△등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공원 △△등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88,873	176,516	△12,357	△6.54%
노 무 비	148,287	137,116	△11,171	△7.53%
경 비	31,592	30,994	△598	△1.89%
기 타	8,994	8,406	△588	△6.54%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전과제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외여비 : 국외 여비 식비, 숙박비 단가 조정
 - ※ 국외여비 지급표 및 할인정액 지급 기준표(제16조 1항)
2호 가등급 → 2호 나등급
 - 전산처리비 인터넷 사용료 단가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13)

△△핵심소재 연구기반 구축 타당성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핵심소재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49,130	140,295	△8,835	△5.92%
노 무 비	96,474	92,979	△3,495	△3.62%
경 비	21,257	17,799	△3,458	△16.27%
기 타	31,399	29,517	△1,882	△4.13%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인원 및 참여율 조정
- 경 비
 - 회의비 조정 : 자문위원 수당 조정
※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적용
 - 교통비 단가 조정
 - 세미나 진행비 조정
※ 유사기준 적용 : 인터넷 가격 조사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13)

□ 기타사항

- 추가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실태조사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실태조사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246,300	234,560	△11,740	△4.77%
노 무 비	166,809	164,618	△2,191	△4.91%
경 비	67,766	65,344	△2,422	△1.35%
기 타	11,725	4,598	△7,127	△3.47%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전과제 참여율 조정
- 경 비
 - 전산처리비 단가 조정
 - 인터넷 사용료, 토너 구입비, 복사용지 단가 조정
 - 회의비(자문회의 횟수) 조정
 - 일반관리비율 조정
 - ※일반관리비율, 5% → 2% (도정개발연구원 2% 이내)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13)

□ 기타사항

- 추가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박물관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연구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액	비 고
계	199,173	189,578	△9,595	△4.82%
노 무 비	154,784	146,945	△7,839	△5.06%
경 비	34,905	33,606	△1,299	△3.72%
기 타	9,484	9,027	△457	△4.82%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참여율 조정 : 전과제 참여율 조정
- 경 비
 - 국내여비 조정 - 현지 출장 횟수 조정
 - 국외여비 조정 - 일본 및 중국여비 단가 조정
 - 별표1의 제1호가목 가등급 → 별표1의 제1호가목 나등급
 - 전산처리비 단가 조정
 - 인터넷 사용료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2011.9.26)
- 경상북도 학술용역 기준(2013. 3.13)

기타사항

- 추가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일반용역



△△개발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21,514ton(폐콘크리트 10,463 폐아스콘 11,051)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654,213	537,527	△116,686	△17.84%
운 반 비	221,637	197,928	△23,709	△10.70%
처 리 비	373,102	290,733	△82,369	△22.08%
부 가 세	59,474	48,866	△10,608	△17.84%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사업장과 인근 폐기물처리 업체(3업체)의 거리를 평균산출하여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가 적용 심사
 -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 단가 적용
- 처리비 : 자체 처리 기준단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규모 : L=370.93k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648,000	608,482	△39,518	△6.10%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의견수렴 및 주민의견 수렴 적용할증율 100% → 20%조정 • 부록작성 적용할증율 30% → 20% 적용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경인쇄 - 복사인쇄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8. 12)
-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심사 착안사항

- 각종 부분별 추진 업무의 인건비 적용할증율 조정

○○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L=40k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130,900	121,110	△9,790	△7.48%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인 건 비	• 주민의견 수렴,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작성 적용할증율 50% → 20% 적용	
경 비	• 기술사 및 특급기술사 일비 및 식비 45,000원 • 대구~울진 왕복 교통비 34,400원 적용 • 보고서 컬러복사인쇄 1,000원 → 200원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8. 12)
-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심사 착안사항

- 각종 부분별 추진 업무의 인건비 적용할증율 조정

○○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35,855ton(폐콘크리트 16,623, 폐아스콘 19,232)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1,159,157	858,835	△300,322	△25.91%
운 반 비	369,378	250,985	△118,393	△32.05%
처 리 비	684,429	529,775	△154,654	△22.60%
부 가 세	105,350	78,075	△27,275	△25.89%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처리비 : 요청부서와 심사부서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26,567ton(폐콘크리트 13,825, 폐아스콘 12,742)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856,294	635,198	△221,096	△25.82%
운 반 비	273,693	185,969	△87,724	△32.05%
처 리 비	504,756	391,484	△113,272	△22.44%
부 가 세	77,845	57,745	△20,100	△25.82%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요청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폐콘크리트(10,320원 → 7,000) 폐아스콘(10,302원 → 7,000원)
- 처리비 : 요청부서와 심사부서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 폐콘크리트(18,244원 → 14,400) 폐아스콘(19,819원 → 15,100원)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천 생태공원조성 문화재정밀발굴 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3,048㎡(○○군 △△면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실조사일수 33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정밀발굴 조사	223,287	198,187	△25,100	△11.24%

주요 심사내용

- 공통사항
 - 직접인건비, 현장인부임 : 조사일수 소수점 이하 절사
- 직접경비
 - 주재비 : 50% → 40% 조정
 - 사무실 설치비 : 컨테이너 운반비 삭감
 - 소모품비 : 부가세 삭감, 자체 기준단가 적용
 - 조사재료비, 유물정리비 : 자체 기준단가 적용
 - 제경비 110% → 100% 조정, 학술료 30% → 20% 조정
- 조치 및 권고사항
 - 2013년 일반용역 보험요율적용 후 추진
 - 일반용역 요율 9.518% 적용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일수참고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하수도시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7,738ton(폐콘크리트 3,922 페아스콘 3,816)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291,015	195,764	△95,251	△32.73%
운 반 비	103,224	63,869	△39,355	△38.13%
처 리 비	161,335	114,098	△47,237	△29.28%
부 가 세	26,456	17,797	△8,659	△32.73%

□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심사부서 견적가 적용(8,254원)
- 처리비 : 심사부서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 폐콘리트 14,400원, 페아스콘 15,100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진입도로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10,762ton
(폐콘크리트 3,498 페아스콘 5,155 혼합폐기물 2,109)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476,561	320,966	△155,595	△32.65%
운 반 비	110,870	89,762	△21,108	△19.04%
처 리 비	322,368	202,026	△120,342	△37.33%
부 가 세	43,323	29,178	△14,145	△32.65%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품셈단가 적용
 - 폐콘크리트 8,037원, 페아스콘 7,991원, 혼합폐기물 9,699원
 - 견적업체(3개업체)와 사업장간의 산술평균거리 적용
- 처리비 : 심사부서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 폐콘리트, 페아스콘 : 심사부서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폐콘크리트 (14,400원), 페아스콘(15,100원)
 - 혼합폐기물 :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35,000원)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전선 지중화사업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규모 : 2,292㎡(△△시 △△동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실조사일수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발굴 조사	614,658	556,776	△57,882	△9.42%

□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조사일수 조정
 - 현장조사 : 조사단장 20일 → 8일, 책임조사원 45일 → 17일
 - 정리 및 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단장 10일 → 6일,
책임조사원 30일 → 21일
 - 현장조사, 정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일수 조정에 따른 주휴수당 일수 조정
- 직접경비
 -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현장조사일수 조정에 따른 예비일수 조정
 - 현장인부임 작업일수 조정 90일 → 85일
 - 도로컷팅 작업에 따른 현장조사 작업일수 조정
 - 현장인부임 작업일수 조정에 따른 주휴수당 일수 조정
 - 각종 비품수선비 삭감
 - 컨테이너 임차료 : 자체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 안내판 및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비 : 자체 계약원가심사 기준 단가 적용

2013 계약심사 사례집 ◀◀

- 소모품비, 조사재료비 등 : 자체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및 타 용역 수준 등으로 조정
- 조치 및 권고사항
 - 2013년 일반용역 보험요율적용 후 추진
 - 일반용역 요율 9.518% 적용
 -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일수참고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사업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공사
- 사업규모 : 750㎡(○○군 △△면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실조사일수 29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발굴(정밀) 조사	163,658	151,954	△11,704	△7.15%

주요 심사내용

- 인건비
 - 직접인건비 : 조사일수 소수점 이하 절사
 - 직접경비
 - 수송비 : 장비수송비만 인정
 - 유류대 : 현장차량 유류대 삭감
 - 컨테이너 임차료 : 자체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 조사재료비 : 자체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 적용
 - 보험요율 : 9.31% 적용(제출된 근거자료 적용)
 - 제경비 : 105% → 100%조정
 - 학술료 : 25% → 20%조정
-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일수참고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규모 : 960,974㎡(△△시 △△동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사후환경영향조사	1,364,000	1,255,069	△108,931	△7.99%

주요 심사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직접인건비	• 과업지시서와 상이한(온실가스)내역 설계서 감	
제 경 비	• 115% → 110%조정	
기 술 료	• 25% → 20%조정	
인 쇄 료	• 단가조정 6,000원 → 650원 조정	
출 장 비	• 단가조정 100,000원 → 20,000원 조정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심사 착안사항

- 직접인건비 대기환경분야 온실가스 항목은 설계내역서와 과업지시서가 상이하여 설계내역에 감액하였으니 사업목적상 반드시 시행할 항목일 경우 과업지시서의 환경영향조사항목에 추가하고 심사요청 당시 설계내역서 금액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지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규모 : 전략 L=58.55km, 소규모 L=20.40k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702,800	646,635	△56,165	△7.99%

주요 심사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직접인건비	• 할증율 조정 100% → 20%(협의회 의견수렴 등)	17,084
인 쇄 료	• 금액 조정 : 7,188천원 → 6,372천원 조정 횟수 조정 : 2회 → 1회	8,004
기 타	•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등	31,077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심사 착안사항

- 전략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사업규모에 대한 할증율은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검토 후 사업추진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규모 : 8,138ton(폐콘크리트 6,424, 폐아스콘 313 혼합 1,038 건축 363)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률
계	337,470	217,659	△119,811	△35.50%
운 반 비	96,353	64,887	△31,466	△32.66%
처 리 비	210,438	132,985	△77,453	△36.81%
부 가 세	30,679	19,787	△10,892	△35.50%

□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발주부서, 견적, 자체단가 중 최저가 적용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11,840원 → 7,915원) 혼합, 건설(11,840원 → 7,915원)
 - 견적업체(3개업체)와 사업장간의 산술평균거리 적용
- 처리비 : 발주부서, 견적, 자체단가 중 최저가 적용
 - 폐콘크리트 (18,244원 → 14,400원), 폐아스콘(19,819원 → 15,100원), 건설(74,151원 → 19,200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L=96.36k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합 계	374,300	343,078	△31,222	△8.34%
○○권역	131,400	117,005	△14,395	△10.96%
□□권역	136,900	127,480	△9,420	△6.88%
△△권역	106,000	98,593	△7,407	△6.99%

□ 주요 심사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대가기준 변경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 기준 변경 적용 환경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 사업부서 협의에 따라 품셈요율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2008-16호)
-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08-1호

□ 심사 착안사항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산정기준은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현재는 별도 산정기준이 없음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유선 문의〔○○○사무관, △△△, 13.10.1〕결과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계획의 대행비용은 종전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2008.12)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
- 위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원가산정 후 사업부서와 E-mail 및 유선(3642, 13.10.4)협의 후 설계내역서 변경 확정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 후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공고할 경우 설계내역서의 신문 공고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추진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업 조성부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군
- 사업규모 : 1,641㎡(○○군 △△면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실조사일수 22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유적발굴 조사	158,645	147,714	△10,931	△6.89%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주재에 따른 비용 변경(여비 → 주재비) • 소모품비, 조사재료비, 유물정리비간행비 등 道 자체기준 적용 • 제경비 효율조정(105% → 100%) • 학술료 효율 조정(25% → 20%)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100,106㎡(△△시 ○○동 일원, 표본 31,164 시굴 68,942)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실조사일수 45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표본 및 시굴조사	218,432	194,464	△23,968	△10.97%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인건비 사업대가 규정에 맞게 조정 • 직접경비 산출 방법 변경(요일 → 실비) • 소모품비, 조사재료비, 유물정리비, 간행비 등 道 자체기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2-5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기준단가(2013. 3. 13)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물품 구매·인쇄



△△ 비료 구입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험장
- 사업규모 : △△비료, 32톤 구입
- 규 격 : 복합비료
 - 유기물70%이상
 - N-P-K 합계량8%이상
 - 유기농자재공시제품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비료	77,440	17,952	△59,488	△76.82%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2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404호, 2012. 3. 22)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농약 구매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원
- 사업규모 : 입제 외 39개 품목 4,730점
- 규 격 :
 - 논풍입제 품목 4,730점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입제 외 39개 품목 구매	38,132	28,070	△10,062	△26.39%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 및 원가심사부서에서 구매규격서를 만족하는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
- 견적조사(7개업체) : 사업부서 3개업체, 심사부서 4개업체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방송 시스템 보강 구매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원
- 사업규모 : 방송 시스템 보강 1식
- 규 격
 - △△방송 시스템 보강 1식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방송 시스템 보강 구입	110,000	102,652	△7,348	△6.68%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4개업체) : 사업부서 3개업체, 심사부서 1개업체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행부 예규 제2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적용기준(2013.3.13)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덮개 제작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사
- 사업규모 : △△덮개 제작 구매
- 규 격
 - 홑 덮개 : 36개 제작 구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덮개 제작 구매	52,769	49,918	△2,851	△5.40%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조정
 - PE 천막원단 단가 조정 : 600원/m² → 570원/m²
- 노무비 조정
 - 천막재단 및 접착 : 2.5개/일 → 2.7개/일
 - 테두리 보강 봉제 : 2.5개/일 → 2.7개/일
 - 아이넷부착용 구멍내기 : 2.5개/일 → 2.7개/일
 - 아이넷부착 : 2.5개/일 → 2.7개/일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제21호, 2013. 6. 19)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2011. 9. 26)

기타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 약품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소
- 사업규모 : △△ 약품 등 81종
- 사업목적 : △△에 소요될 약품 구입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 약품 구매	33,374	22,462	△10,912	△32.70%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 : 산출기초 조사단가(2개업체)의 평균단가 적용
-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의 조사단가중 품목별 최저가 적용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요구된 제품은 견적에 따라 가격차가 커 최저 견적이 적용

○○장비 보강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장비 등 3개 품목
- 사업목적 : ○○장비 보강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추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장비 보강 구매	23,220	21,550	△1,670	△7.19%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 및 심사부서의 조사단가중 품목별 최저가 적용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장치 축전지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장치 축전지 180개 교체
- 사업목적 : 노후 축전지 교체를 통한 전원공급 불완전 해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비 고
△△장치 축전지 구매	53,856	43,560	△10,296	△19.12%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이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장비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 시스템서버의 4개품목
- 사업목적 : 서버교체 및 업그레이드로 사업안정화 추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율
△△ 장비 구매	109,600	100,650	△8,950	△8.17%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이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3개 업체)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장비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 세트외 19개품목 721종
- 사업목적 : △△장비 구입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확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율
△△ 장비 구매	1,179,607	1,046,409	△133,198	△11.29%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이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3개 업체)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사업 시스템 구매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서버 및 S/W구입 11종, S/W개발 및 DB구축
- 사업목적 :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확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율
서버구입 등	225,550	213,310	△12,240	△5.43%

주요 심사내용

- 서버 및 S/W 구입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3개업체), 심사부서(3개 업체)
- S/W개발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 조정(1.7 → 1.3)
- 조정내역 : WEB/WAS 등 11종 및 S/W개발

(단위 : 천원)

품 목	요청단가	심사단가	절감액	절감율
WEB/WAS	26,000	24,960	△1,040	△4.00%
S/W개발	23,800	18,200	△5,600	△23.53%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S/W개발을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비 산정

△△ 용품 구입

 심사개요

- 발주부서 : △△의료원
- 사업규모 : ○○용품 98종
- 사업목적 : ○○용품 구매를 통한 업무 추진의 적정성 확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율
○○용품 구매	152,734	119,737	△32,997	△21.60%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이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2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 조정품목 : ○○ 등 72개 품목

(단위 : 천원)

품 목	요청단가	심사단가	절감액	절감율
○○	300	200	△100	△33.33%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용품은 수시로 공급되는 물품으로 공급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가격외의 부대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업체로부터 견적 요청

○○ 물품 구입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물품 10개(수평 9, 상하자 1)
- 사업목적 : ○○물품 구매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확보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율
○○물품	27,005	24,530	△2,475	9.16%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와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 견적조사 발주부서(2개업체), 심사부서(2개 업체)
- 조정품목
 - 수평 컨베이어(2,695천원 → 2,420천원)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37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업무용 수첩 및 포켓 구입

심사개요

- 발주부서 : ○○과
- 사업규모 : 업무용, 포켓용 수첩 발간(5,700부)
- 사업목적 : 도정홍보, 업무효율성 확대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	절감율
업무용, 포켓수첩 구입	44,845	38,936	△5,909	△13.18%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 원가계산금액과 심사부서 견적가 중 최저 단가 적용

심사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2697호)

심사 착안사항

- 추가 절감방안이 있을 경우, 자체반영 후 발주

Part 2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시·군 자체심사 사례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도로개설 및 언더패스정비 L=420m, B=8.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419,437	386,185	33,252	7.93%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포장 합판거푸집 수량산출 오류 수정 - 구조물구간 거푸집 공제물량 반영 - 면적산출 착오계상분 수정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 수급방법 변경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혼합쇄석 $\phi 40, 75\text{mm}$: 18,000원/m³ → 15,210원/m³ - 계비온 채움석 $\phi 100\sim 150\text{mm}$: 19,000원/m³ → 23,910원/m³
폐기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단가 조정 - 폐콘크리트 : 15,000원/톤 → 12,000원/톤 - 폐아스콘 : 16,000원/톤 → 13,000원/톤 - 폐기물운반비 : 협회단가 → 덤프트럭 산출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리 배수관개랑공사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급배수관로 L=6.966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15,000	850,500	64,500	7.05%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토처리 운반거리 조정(실제운반거리 적용) 1km → 2km, 0.5km → 1km • 사토장 정리 단가 조정 : 사토량의 1/3적용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 작업능력 조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적용범위내 작업능력상한값 적용) 4.6㎡/hr(평균값) → 5.9㎡/hr(상한값) • 폐기물상차 굴삭기 작업효율(E) 조정 0.35 → 0.45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가공조립 단가 조정 현장가공 → 공장가공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표층포설 및 다짐 시공폭 조정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기계시공(1.4m≤시공폭<3m)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운반거리 조정 25km → 20km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호)

○○체육공원 주차장설치 조성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시
- 사업량 : 주차장(잔디블록)설치 1,220㎡ 콘크리트포장 6,633㎡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19,500	187,720	31,780	14.47%

□ 주요 심사내용

- 잔디블록설치(호안블록붙이기(기계)품으로 조정)
 - 블록설치(특별인부) 0.015 → 0.017 블록보조(보통인부) 0.03 → 0.007
 - 크레인 0.08 → 0.048
- 콘크리트포장(현장 작업여건 고려)
 - 일당 시공량 50㎡ 적용 → 100㎡로 조정
- 법면보호공(줄때)
 - 소운반(지게), 작업반장 계상 → 소운반, 작업반장 삭제
- 황토포장
 - 표면처리 계상 → 표면처리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37호)

○○시설 정기설치사업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전기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305,175	2,003,220	301,955	13.10%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작성 → 단가조사서에 1식 견적은 지향 • 정보통신(계측제어)공사 적용방법 → 통신품셈적용 • 분리 설계예산서 작성 → 통합 작성(취정수장,통합배수지) • 도급공사와 관급자재 분리작성 →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 관급자재 일위대가표 직접인건비 견적처리 1식 → 표준품셈
도급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자재 추가 • 통합 광케이블 싱글 링 통신망 구성 설계도서 수정
관급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내역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및 삭감액 : △ 607,955천원 - 누락추가 증감액 : 306,000천원

심사근거 및 기준

- 전기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정수장 통신설치사업

□ 사업개요

- 발주기관 : ○○군
- 사업량 : 통신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3,410,827	3,004,765	406,062	11.91%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작성 → 단가조사서에 1식 견적은 지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437호(2012.12.24) 제2장 적용 • 정보통신(계측제어)공사 적용방법 → 통신품셈적용 · 정보통신 표준품셈 명시되지 않은 사항 → 타부문 표준품셈 적용 타부문과 유사한 공정의 품셈 → 정보통신 품셈 우선 적용 • 취정수장 통합배수지 설계예산서 분리작성 → 통합작성 • 도급공사와 관급자재 통합작성 → 분리작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직접 구매(분리발주) 시공
도급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자재 추가 및 통합 광케이블 싱글 링 통신망 구성 ·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등 설계도서 수정 재설계
관급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 직접인건비 견적처리 1식 → 표준품셈 적용 • 수정 및 삭감 △652,000천원, 누락추가 증감 306,000천원

□ 심사근거 및 기준

- 통신공사 표준품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21호)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도로개설 L=1.57km B=15~30m(6차선)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3,205,000	11,172,000	2,033,000	15.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 깨기 품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콘크리트 깨기(T=30cm이상)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품셈20-1.3.다)는 헐기 및 부수기 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깨기(품셈10-20.2)에 이미 보조인부(보통인부)가 반영 되어 있으므로 장애물 제거에 이중 계상된 보통인부 0.08인 제외 • 연암의 굴착공법을 현장여건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에 적용된 연암의 굴착 공법은 타 지역의 경우 발파암과 리핑을 혼용하며 적용하고 있으나, △△시의 토질 특성과 인근 사업장의 시공사례, 지반조사보고서상 경제성을 요구한 검토내용 및 낙찰자에게 공정에 맞는 적절한 착공 단가유도 등 종합적 검토 결과 금회 연암굴착 시공은 발파암에서 리핑작기 단가로 조정함이 타당
부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소 규모를 총공사비 금액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소의 규모는 직접노무비 금액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배수지 신설 및 상수도 관로 부설
 - 배수지 : 공업 1,100㎡, 생활 70㎡
 - 관로공 : 송수관로(D700 ~ D300) 8.1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8,052,000	7,099,000	953,000	11.8%

□ 주요 심사내용

항목	심사결과 및 의견
관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과 설계에 반영된 내역의 부합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횡단구간(L=92.9m)에 대하여 T-4천공 및 SHEET PILE 적용하였으나 지하수위가 매설 송수관로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오픈컷 및 가물막이 시설로 조정 → T-4천공 및 SHEET PILE 시공 관련 모든 공정 제외 • 설계에 반영된 공정의 실제 시공 기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 간이 흙막이(300형:H3.0×B1.5)의 토류벽 사용료 일수 산정시 관접합 및 부설 1일, 되메우기 및 기타 1일 적용되어 있으나 실공정 분석검토 결과 전공정 각 0.5일에 시공 가능함으로 검토결과 반영
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정설치(1000×1000)시 그레이팅 뚜껑제작설치(철판, 원형봉)에 따른 잡물물제작설치 품을 적용하였으나 기성품 대체로 재료비 및 인건비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시 일상감사 운영규정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경관녹지 복구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기관) : △△시
- 사업량(용역내용) : 경관녹지 복구 1식
- 공사(사업,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구매)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140,000	112,800	27,200	19.43%

주요 심사내용

- 상차 재산정
 - 토량환산계수(f=1.0), 버킷계수(K=0.9), 작업효율(E=0.75) 적용
- 사토운반 재산정
 - 적재 이중계상 삭제, D/T 15톤, 24톤 비교 적용
 - 운반조건 : 상차조건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제437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소 이전시설 공사

사업개요

- 발주부서(기관) : △△시
- 사업량(용역내용) : 컨츄리매너블록 L=186.0m, 전망데크 10개소
- 공사(사업,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구매)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3,370	84,070	9,300	10.00%

주요 심사내용

- 컨츄리매너블록 쌓기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블록설치 적용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제437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조성사업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 1식
- 용역기간 : 기본계획 및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99,504	73,985	25,519	25.64%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비를 국내지역 비교연구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 1인 4일 → 0 - 공 무 원 : 심사기준에 의한 공무원 제외 ○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지역 비교연구 조정으로 일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 : 6일 → 20일 - 연 구 원 : 6일 → 25일 - 연구보조원 : 6일 → 15일
이윤 및 부가세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으로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 제외 ○ 부 가 세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의거 제외

심사근거 및 기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4호 2013.11.20)

○○ 신축공사

□ 사업개요

- 발주부서 : △△시
- 사업량 : 기계설비공사 1식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246,339	206,103	40,236	16.3%

□ 주요 심사내용

항 목	심 사 결 과
설계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설계서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함.(냉난방 설비공사 관급 및 사급 불분명) - 시설구역별 냉난방 부하설계기준 미계산으로 인해 합리적 냉난방 용량 및 분배누락.
냉난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 GHP설비공사의 관급자재는 별도 설계로 변경하여 공사시행(조달청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전문공사를 일괄 도급공사처리시 도급자가 사급처리(하도급)하여 전문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에 이를 방지하고자 관급자재구매 요청(조달청) 실시함이 타당함.

항 목	심 사 결 과
위생기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2층 여자화장실 양변기 수량 부족 현재 2개 → 3개 (1개 확대) - * 여자화장실 면적확대가 필요함. (추후 시설물사용부서 협의가 요망됨) - 1층 여자화장실내 유아수유시설 설치요망 (벽부형 접이식 권장) - 2층 여자화장실내 소재 썬크 삭제 검토

항 목	심 사 결 과
위생배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기용 수전 및 배수관 1개소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장소 : 1, 2층 사무실내 (화장실벽) * 3층 정수기 설치와 동일하도록 변경요망
관급자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공사 설계서 별도 납품요망 (차후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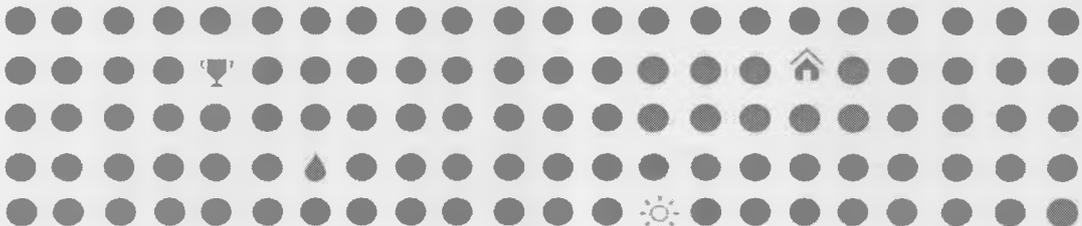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4호, 2013. 11.20.)

Part 3

부 록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Part 3 부록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2008-12-15 규칙 제 2605호
(일부개정) 2010-06-21 규칙 제 2656호
(일부개정) 2011-09-26 규칙 제 26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원가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 나.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시·군
 - 라. 도 지방공기업
 - 마. 도 출연기관(다만, 100분의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개정 '10.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11.09.26)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제3호 다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1.09.26)

② 원가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1.09.2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1.09.2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원가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심사를 함께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

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11.09.26)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문회의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등:)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등:)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p>○ 물품 사양 :</p>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수리목적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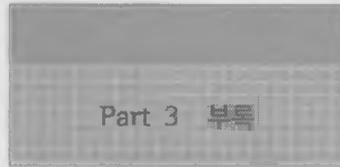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직전도급 계약금액	천원	변경도급 예정액	천원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 :		- 국 비 : - 도 비 : - 시·군비 :		
사업 개요					
<p>○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p> <p>-</p> <p>-</p> <p>-</p>					
<p>○ 첨부 서류</p> <p>1. 설계변경이유 조서</p> <p>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p> <p>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p>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 20.)]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 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 부터 “라”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 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 부터 “라” 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 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전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

협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 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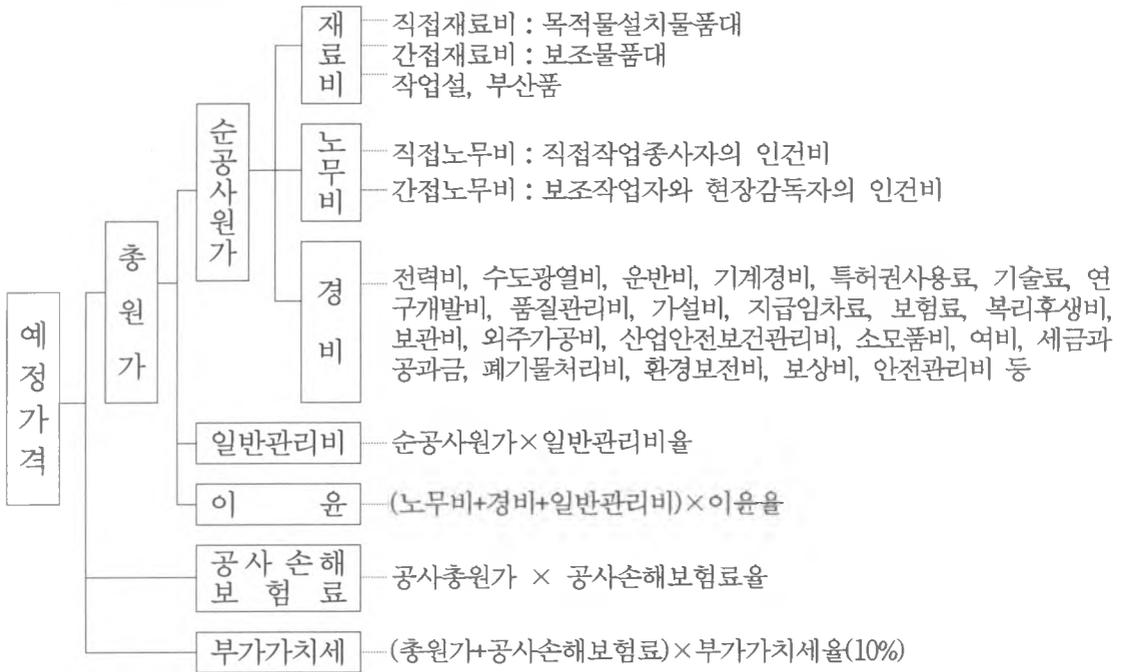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 접착제 · 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

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 과 제2관 “4” 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

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

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

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 와 제3관 “5-가” 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 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

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 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밖의 부

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정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포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포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포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 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 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 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 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 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규격 :

생산량 :
단 위 :

제조기간 :

구분		금 액	구성비	비교
비 목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제 조 원 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비목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사·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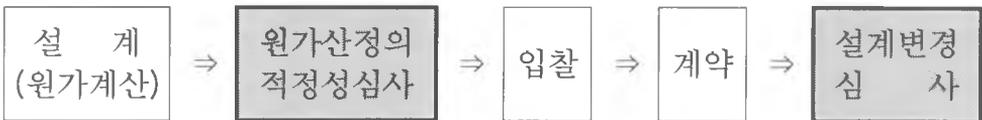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

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 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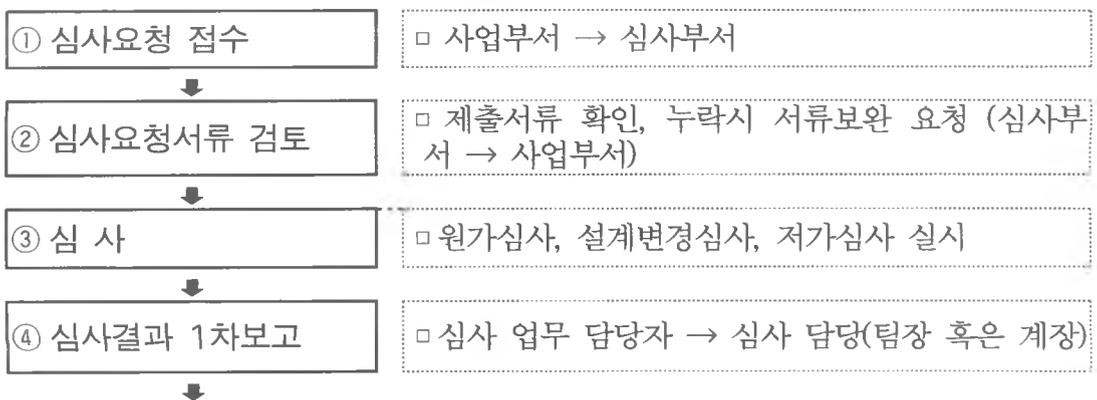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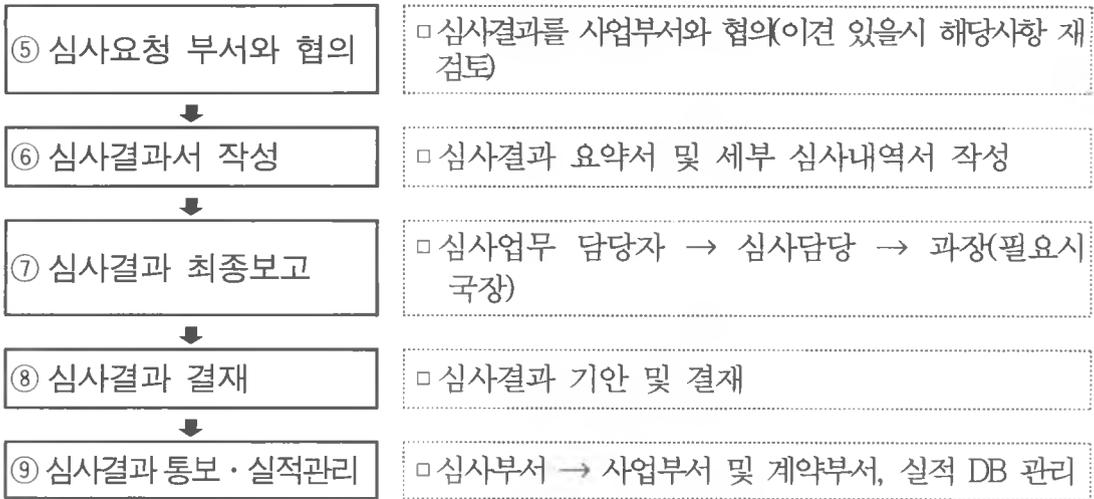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

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 부터 “5)” 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 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 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 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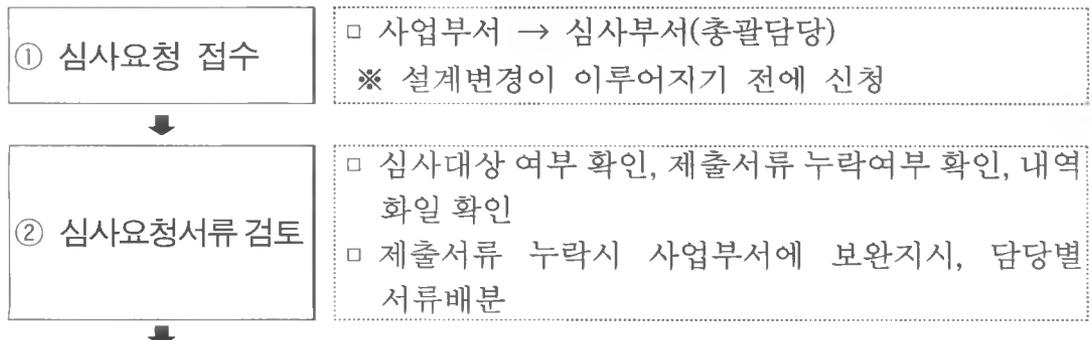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정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 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횡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

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 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도급비 :	
	- 관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책임기술자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공사명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륜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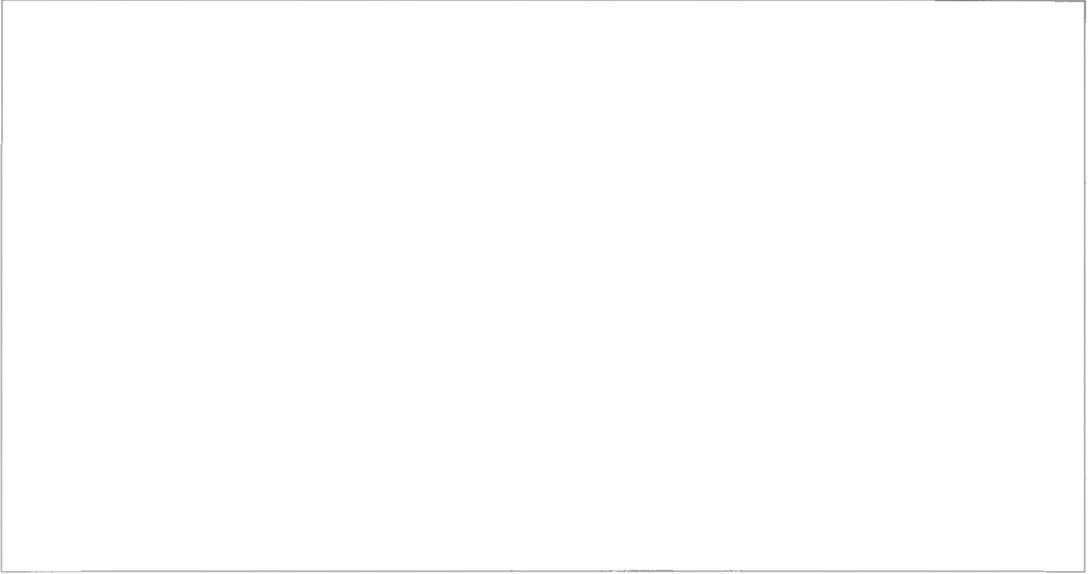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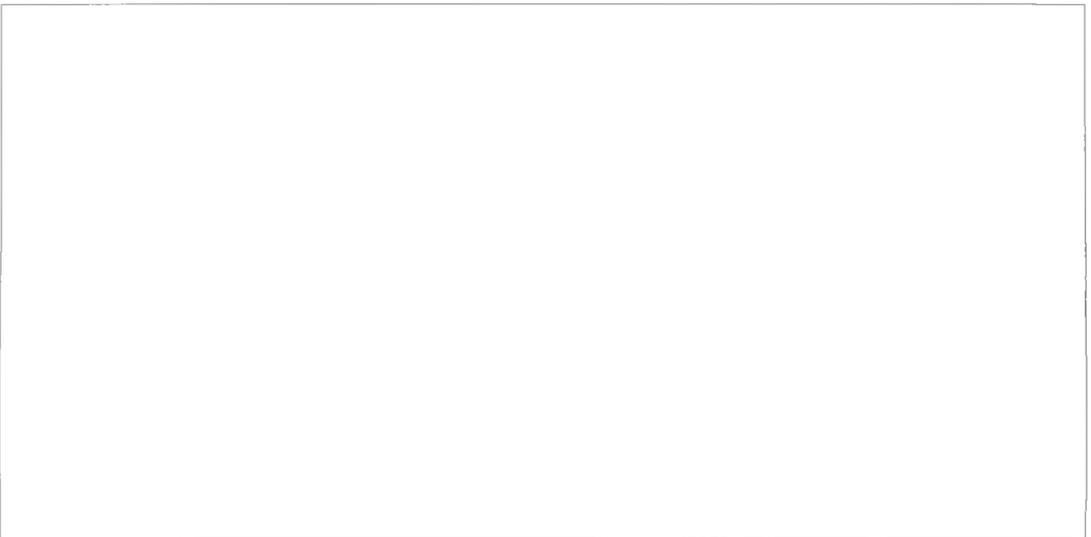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용역명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 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쇄비			
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 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 · 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운(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건 명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				

발신명의	
------	--